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4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알림

-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48조제15호, 제60조제11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4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을 선정 ·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관련 협회에서는 회원사 등에서 동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공고 사항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24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
의약품유통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무관

이병희

사무관

한은경

의약품관리과 전결 2024. 5. 29.

과장

문은희

협조자

시행 의약품관리과-5376

(2024. 5. 30.)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
처 의약품관리과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658

팩스번호 043-719-2650

/ bhlee@korea.kr

/ 대국민 공개